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손 자 용

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리 참석공무원 의결권 부여 (안 제4조제5항) : 의견을 말할 수 있다. →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·처분 기준가격 현실화 및 상향조정(안 제5조제2항) :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→ 3천만원 이하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

일치되게 조정(안 제12조제1항)

- 당초계획 :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→ 의결하기 전까지
- 변경계획 :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→ 의결하기 전까지

○ 행정안전부 「공유재산 관리·처분기준」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신설 및 조정 (안 제40조 1호 내지 8호)

- 도외의 자의 건물로 점유되어 매각할 수 있는 도유지 면적 조정
 - 시지역 1,000㎡ 이하 → 1,500㎡ 이하
 - 기타지역 2,000㎡ 이하 → 3,000㎡ 이하
- 도외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매각 면적범위 조정
 - 단독주택일 경우 200㎡ 이내 → 특별시·광역시의 동지역은 300㎡이내, 시의 동 지역은 500㎡ 이내, 기타 읍·면은 1,000㎡ 이내로 한정
 - 분할매각시 건축면적이 시·군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 미달할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-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외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·대부하여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자에게 10,000㎡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- 재산의 위치·규모·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도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거나 소규모 도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사유지 효용이 저해되는 경우 재산평정 가격이 특별시·광역시는 2억원이하, 시의 동지역 1억원 이하, 읍·면지역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

-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일치되게 조정(안 63조제1항) : 50만원 초과인 경우 6월 2회 분납 → 삭제

4. 검토의견

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-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리 참석공무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·처분 기준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,
- 행정안전부 「공유재산 관리·처분기준」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 및 조정하고,
-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일치되게 조정하기 위하여 50만원 초과인 경우 6월 2회 분납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.

금번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상위법

령 및 공유재산 관리·처분기준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
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